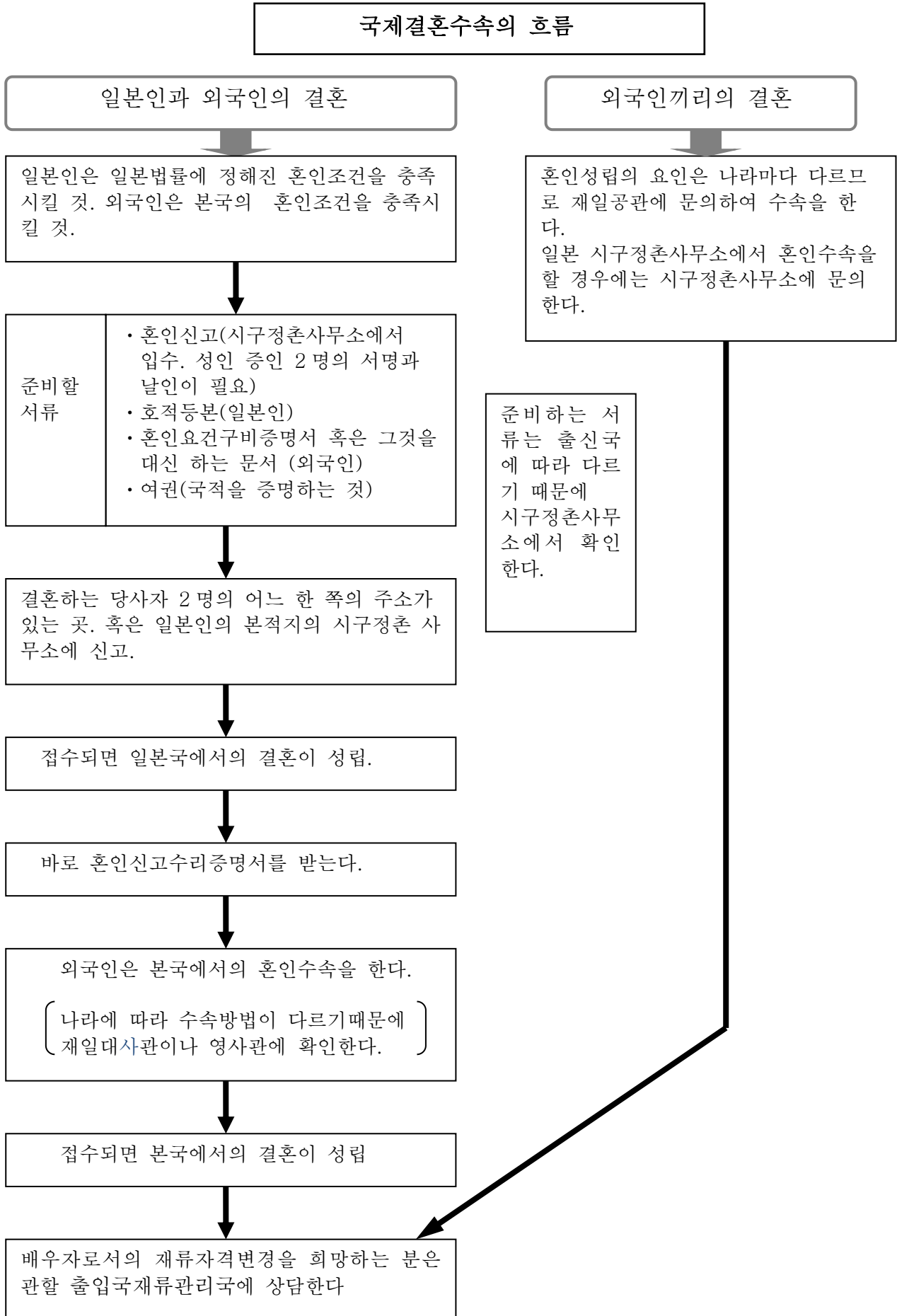


IV-3 결혼



1. 일본인과 외국인의 결혼

일본에서 일본인과 혼인할 경우 시구정촌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일본인은 일본법률에서 정해진 결혼의 조건을, 외국인은 그 나라의 결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호적등본 혹은 초본 (일본인)
2. 여권 (국적을 증명하는 것)
3. 자국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이 발행하는 혼인요건증명서나 그를 대신하는 문서 (일본말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번역자의 주소/성명/날인이 있는 번역문의 첨부가 필요함.)
4. 혼인신고서 (창구에 있습니다. 신고에는 20세 이상인 증인 2명의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또 신고서는 일본어로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본에서 성립된 결혼은 본국에서의 신고도 필요합니다. 그때에는 「혼인신고수리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신고를 한 시구정촌사무소에서 발행 받도록 해 주십시오. 본국에서의 수속은 나라에 따라 다르므로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부록IX-5)

결혼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2. 외국인끼리의 결혼

외국국적인 분들간의 일본법률에 따른 결혼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이 각각 본국에서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고는 단정 못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혼신고에 대해서는 자국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 (부록IX-5) 과 신고하는 일본의 시구정촌사무소 (부록IX-1)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3. 재류자격의 변경

일본인과 혼인하여 일본인배우자로의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할 경우 혹은 외국인끼리의 결혼이라도 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 (부록IX-2) 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4. 재류카드 기재내용 변경

결혼 후에 이름이 변경될 경우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또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시정촌에 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록IX-1)

5. 기타 변경

결혼하면 세금, 연금, 건강보험, 직장에서의 급여면에서 기존과 취급이 달라질 경우가 있으므로 직장 담당자에게 상담하여 주십시오.